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장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6호로 2021년 10월 8일 장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9조제5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편성

다. 입법예고 결과(2021.10.8. ~ 10.13. / 6일 간):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등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치입법화하여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기존에는 위 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근거하여 접종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